

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1087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이성현

피고B

변론 종결 2022. 4. 29.

판결 선고 2022. 6.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2.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177,9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177,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81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5. 'C는 원고에게 3,501,314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10. 1. 2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3.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2021. 7. 23. 현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14,177,915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약과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C의 부친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쳐주었다.

2) D이 2021. 1. 25. 사망(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F, 자녀인 C, 피고, G는 2021.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21. 3.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9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가 망인 생전에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받아간 상태였고, 피고가 망인과 F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1)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3. 18. 현재 시가는 253,457,538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총 4,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은 47,435,008원[(253,457,538원-4,000만원)×2/9, 원 미만 버림]이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 14,177,915원은 이 사건 각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4,177,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명환

별지